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62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A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1. 15.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과세물건에 대한 각 부과세액란 기재 취득세 등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9.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7. 13. 및 2016. 8. 25. 별지1 표 과세물건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별지2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2. 27. 국토교통부 고시 B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redacted]시 C리부터 [redacted]시 D리 일대에 대하여 E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9. 및 2017. 7. 5. 현지 출장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일부터 1년이 되어가도록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25.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110,338,77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7. 11. 13.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별지1 표와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관광농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국토교통부 2016. 12. 27.자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7. 10. 25.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한 점, 관광농원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기다리던 중 위 2016. 12. 27.자 고시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다. 정당한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용도를 F, G, H, I 각 토지는 '버섯, 허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농장 및 부대시설'로, J 토지는 '도로'로 기재한 사용목적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그 용도로 신고한 '버섯, 허브농장 및 부대시설,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고,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관광농원 부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2017. 5. 15. 불가처분을 받았다),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서(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의미하는 농업과는 명확히 구별된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③ 원고는 관광농원사업이 영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G 토지 중 937㎡는 작목입식시설(버섯, 산채, 고구마, 감자 등 농산물 식재)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토지에 부과된 10,717,360원의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가 2016. 9. 26. 피고에 대하여 제출한 관광농원사업 관련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임산물과 작물의 입식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전체 계획인 관광농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이 그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농작물재배업이나 임업으로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토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의 2016. 12. 27.자 고시에 의해 고속도로 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에 편입됨으로써 결국 영농에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2015. 5.경부터 위 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2016. 7.경 실시설계가 승인되고 착공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2016. 7. 13., 2016. 8. 25.)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장애사유가 노력에 따라 해소 가능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인해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등 참조).

또 위 ②항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관광농원 부지로 개발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비로소 영농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해야 한다[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3조].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표준에 법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② 원고가 2017. 10. 25.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 날(2017. 7. 13. 및 2017. 8. 25.)로부터 각 30일을 경과한 것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신고로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취득세 면제를 받은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을 경우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신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7. 6. 28.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한 점, 원고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정종건

판사 최유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별지1

과세물건 및 과세내역

<단위 : 원>

연번	과세물건	면적(㎡)	취득일	적용과표	부과세액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소계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1		3,306	2016.7.13.	620,000,000	24,800,000	4,607,840	2,480,000	63,980	1,240,000	31,980	33,223,800
2		937		200,000,000	8,000,000	1,486,400	800,000	20,640	400,000	10,320	10,717,360
3		3,306		620,000,000	24,800,000	4,607,840	2,480,000	63,980	1,240,000	31,980	33,223,800
4		268.5		60,000,000	2,400,000	445,920	240,000	6,190	120,000	3,090	3,215,200
5		3,372	2016.8.25.	600,000,000	24,000,000	2,716,800	2,400,000	31,680	1,200,000	15,840	30,364,320
합계					84,000,000	13,864,800	8,400,000	186,470	4,200,000	93,210	110,744,4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별지2

<감면토지 및 감면세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취득물건 (토지)	면적(㎡)	취득일	적용과표	감면세액		
					합계	취득세	농특세
합계		11,189.5		2,100,000	100,800	84,000	16,800
1		3,306	2016.7.13.	620,000	29,760	24,800	4,960
2		937		200,000	9,600	8,000	1,600
3		3,306		620,000	29,760	24,800	4,960
4		268.5		60,000	2,880	2,400	480
5		3,372	2016.8.25.	600,000	28,800	24,000	4,8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별지3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 · 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 ·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 · 묘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 · 증식업 · 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 · 자연수목원의 조성 · 관리 · 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 취사시설 ·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